

2020년도 4/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21. 2. .

감사위원회

1.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안전 등 위해요인 사전제거
- 건설공사 목적물의 유지관리 및 이용 효율성 증진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
- 감사기간 : 2019. 11. 28. ~ 12. 18.(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2017년 이후 실시된 자동차 전용도로 11개 노선의 안전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보수·보강(용역·물품포함) 등

감사 중점 사항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물 보수·보강의 적정성
- 도로의 안전 및 방재시설물(터널 포함)의 설치, 구조와 성능 적정성
- 도로포장 및 노면표시 공사의 품질 적정성 및 정밀시공 여부
- 차량방호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성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¹⁾	신분상 조치인원 ²⁾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4	19	1,284		3 (4)	4 1,284		4 1,228	6 (15)	1		10			

1)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2) 조치인원은 징계, 주의, 고발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 시정에 따른 훈계·경고·주의 등은 그 인원만 ()내에 기재

□ 총 평

- 서울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중)인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안전 등을 위한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 자재비 과다설계 및 자재공급승인, 교량받침 교체설계 및 시공, 설계기준 부적합 제품 구매·설치, 지주 수평지지력 시험 부적정 실시 등
 - 총 24건을 지적하여 2020. 10. 현재 신분상조치 3명(16명 조치중), 재정상 조치(회수) 56백만원 중 45백만원 회수, 행정상조치 21건 중 8건을 완료함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방음시설 자재의 추정가격 산정을 조달청 거래실례가격 등 조사 확인없이 전문가 가격조사기관의 조사·공표 가격만을 적용하여 총470백만원 상당 예산낭비 초래
 - 교량받침 교체 설계를 현장여건과 맞지 않게 부실설계하고 철근가공상세도 등에 대해 감독자 검토·확인없이 주철근 절단 및 임의 이음 시공
 - LED가로등의 휘도, 색온도, 광효율 등이 설계용역의 설치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부적합한 제품 구매 설치, 1회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 제품(업체) 선정을 2단계 제안공고 방식이 아닌 2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하여 1개 업체가 2개 구간 모두 선정되게 함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녹지관리공사를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없이 작업보호 차량 미배치, 안전조치 등 미확인하여 후방추돌 사고(사상자 9명) 발생
 - 자동차 전용도로 상 옹벽 시설물(총 150개소)에 대한 상태평가 용역보고서에 12개소 누락, 옹벽형식 및 결함지수 오류 작성 등 부실 과업수행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 관련업체(시공자, 공사감독자 등)는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하고 관련공무원 징계 및 주의 등 조치함
 -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안전총괄실로부터 의뢰('20. 4. 16.)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추진 내용

- 대상기관: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
- 감사기간: 2020. 4. 28.~5. 14.(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안전감사2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반('15년 이후~현재)

감사 중점 사항

- ‘입찰참가자격’ 문제점 유무
-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 부여 적정성
- ‘공사비 과다’ 책정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백만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금액)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3	0 (0)	0 (43,900)	0	0 (0)	0 (00,000)	0	0 (00,000)	0	1 (0)	0	0	2 43,900	0 0	0

□ 총 평

- 이 건 사업의 관련자료 확인·市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종합 감사결과,
 - 전직 공무원(前 ○○○국장 갑)의 청탁을 받아 우대 가산점 부여, 시공실적 제한, 사업계획 변경(기존 제안서 철회 및 신규 제안서 접수), 공사비를 부풀리기하여 제안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 가산점 부여, 실적 제한, 사업계획 변경 등은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사전검토 절차 소홀, 기본설계시 발파암 매각예정대금 미공제 등 총3건을 지적하여 '20. 10월 현재 행정상 조치 3건중 1건 완료, 2건 진행 중임.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기존 제안서 철회 및 신규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기 제출된 제안서의 검토된 내용과 유사함을 사유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따른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절차 미이행함
 - 기본설계에 발파암 매각 예정대금 등을 미공제(감액) 함
 - 제3자 제안공고를 하면서 환기시설 설치 제안사항을 가격부분 평가에서 제외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 등 증가 예상됨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 사전검토 절차 이행 소홀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주의 조치
 - 기본설계에 미반영된 매각예정 대금 등을 최종 실시설계 시에 감액 반영토록 통보 조치
 - 환기시설 설치시 적격성 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토록 통보 조치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태 성과감사

1. 감사결과 총괄

가. 그 동안의 노력과 추진성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행정과 복지 전반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찾·동 사업’ 이전의 동주민센터는 주민의 서비스 신청에 대응(신청주의)하고 주민대상으로 일반행정을 실행하는 일종의 민원 행정기관이었다.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지만 찾·동 이전에 동주민센터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단편적 서비스였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복지사각지대와 급증하고 복잡해지는 시민 삶의 위협에 적절한 대처하기에 동주민센터의 역량이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015년 7월 7일 찾·동 사업이 시행되며 동주민센터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발굴주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지향의 공공서비스 센터로의 변모를 시도하였다. 동주민센터 현장 인력을 확충(2018년 까지 누적 2,788명)하여 2014년 말 사회복지직 직원이 동 평균 1.4명에서 2018년 말 6.6명으로 증가하였고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가 37% 감소하고 현장방문을 2.7배로 증가시키는 등 사업의 핵심기반을 마련하였다.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지향하여 65세·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방문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대상 상담율은 대상자 대비 2018년 60.6%에 달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찾동 시행 이전인 2014년 말 156천 가구(동별 368가구)에 불과하던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지원이 2018년 말 기준 556천 가구(동별 1,312 가구)로 250%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법제도의 지원 대상인 주민 외에 도움이 절실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을 다수 발굴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서울형긴급복지, 기금,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총 443,688가구(동별 1,046 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표4] 신규 취약계층 가구 발굴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연 도	합 계	공적제도 지원						기금 사업	민간자원 연 계
		소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 울 형 긴급복지	차상위		
2018	556,481	129,600	45,246	2,707	36,997	16,807	27,843	2,908	423,973
2017	491,694	111,092	28,323	2,704	38,230	14,253	27,582	4,415	376,187
2016	408,530	97,594	35,534	1,971	27,854	8,338	23,897	4,035	306,901
2015	286,098	130,384	47,360	2,376	31,843	9,032	39,773	6,065	149,649
2014	156,212	70,593	17,456	2,594	11,182	-	39,361	5,359	80,260

찾·동 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우리동네주무관(이하 우동주)’ 활동을 통해 동·팀장을 포함, 직렬 구분 없이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주민을 찾아가 만나고 소통하면서 생활민원 청취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공공과 주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 우동주 언론 보도 내용 〉

- #1. 관악구에 사는 71세 독거노인 A씨는 한때 “지하철을 폭파시키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월셋집에는 술병과 폐지,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았다. 참다 못한 집주인이 2017년 겨울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는 “(A씨 때문에) 벌레·악취로 이웃들 항의가 말도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A씨는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6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관악구 사회복지공무원 백미화씨는 일단 긴급주거 지원에 나섰다. 다행히 A씨가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뇌병변 장애인인 A씨가 아예 셋집을 나와 4개월간 노숙을 한 탓이다. 겨우 A씨를 찾아 가족에게 연락하니 부인도 자식도 “이젠 남”이라고만 했다. 포기하지 않은 백씨의 도움으로 A씨는 임대주택에 새 임대주택에 새 동지를 풀었다. 새마을부녀회는 발손, 밑반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스레인지와 도시가스 설치를 도왔다. 이웃의 보살핌 덕분일까. A씨는 이후 눈에 띄게 평온해졌고 직접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019.6.26. 세계일보, 2019.7.9. 뉴스1등, 2019 서울시 찾·동 체험수기 최우수상)
- #2. 마포구 신수동의 한 옥탑방에서 홀로 거주하는 B씨는 3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당시 5~6세인 자녀들과는 시댁에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 이별 후

오랜 기간 홀로 지내왔다. 이후 실직과 건강 악화까지 겹치며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처지를 비관한 B씨는 한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다. 그런 B씨는 올해 초 집 앞에 붙은 안내문 하나를 발견했다, 마포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실시 중인 '우리동네주무관' 안내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신수동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린 B씨는 이후 '우리동네주무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평소 갑상선 이상과 당뇨 등으로 고생하던 B씨는 동주민센터의 담당 주무관과 상담을 거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등록됐다. 이후 평소 큰 부담이 되던 의료비를 하루 1000원~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또 살고 있던 낡은 집에는 장판과 도배, 방풍 작업 등 도움을 받아 추운 겨울을 따뜻이 보낼 수 있었다. 이후 우리동네주무관은 B씨가 보다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도왔다. 또 B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자립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동네주무관으로부터 요양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알선 받고 신청 후 대기 중이다.(2019.4.2. 아시아경제 등)

또한 시는 주민참여와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모임을 지원(2018년 9,572명) 하였고 주민의 자조적인 돌봄 소모임인 나눔이웃을 활성화(5,223명) 시켜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조성하고자 하였고 2018년 15개 자치구, 누적 91개동이 시범 실시 동으로 선정되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였다. 찾·동 사업은 선도적 모범적 동 혁신 모델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최우수 지방시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2017.8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찾·동 사업의 기본요소를 대폭 반영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을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와 같이 찾·동 사업의 각 분야별 가시적 실적을 이루었으나 반면에 문제점 및 한계 역시 드러내고 있다.

먼저 찾·동 사업 추진 이후 자치구 사회복지 직렬의 충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반면에 아래 [표5]와 같이 3년 이상 9급으로 재직하는 자치구 행정직 9급은 124명으로 전체의 5.0%에 불과한데 반해 사회복지직 9급은 486명, 전체의 32.5%로 찾·동 사업 추진 이전 6.4%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노원구는

66.1%, 서대문구는 74.1%, 양천구는 66.1%, 영등포구는 69%, 동작구 50.9%, 관악구는 80.8%, 강동구는 54.7%로 사회복지직 9급의 3년 이상 재작자의 비율이 50%가 넘는 자치구는 7개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직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매우 심각하여 이는 신규로 채용된 사회복지직 내의 사기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5] 자치구 행정·사회복지 직렬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 비교

기간	직렬	전체 인원	9→7급		8→7급		8급 현황			9→8급		9급 현황		
			평균소요	차이 (월)	평균소요	차이 (월)	8급 전체	4년 이상	비율 (%)	평균소요	차이 (월)	9급 전체	3년 이상	비율 (%)
찾동 이후 ³⁾	행정	10,741	07-02-26	기준	04-09-26	기준	3,196	473	14.8	02-05-00	기준	2,484	124	5.0
	사회 복지	2,764	07-09-28	7	04-10-00	1	1,685	171	10.1	02-11-28	7	1,495	486	32.5
찾동 이전 ⁴⁾	행정	9,025	07-07-03	기준	04-04-06	기준	2,706	329	12.2	03-02-27	기준	1,701	56	3.3
	사회 복지	1,182	08-04-09	7	05-02-22	8	538	68	12.6	03-01-17	-1	1,181	76	6.4

자료 : 서울시 e인사마당 통계정보광장 추출

또한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F.G.I.⁵⁾에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는 존재하여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부서별 합의에 따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욕구는 종합적인데 비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역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등 지역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한계를 확인한 것도 사실이었다.

찾·동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등)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과의 연계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지플래너의 인력으로만 한계가 있는 정서적

3) 찾동 이후 : 2015.7.1.~2020.03.03.

4) 찾동 이전 : 2010.7.1.~2015.6.30

5) 2019.6.12.~6.27.간 도봉구, 마포구, 용산구 찾·동사업 추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6회 F.G.I. 실시

지원을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주민 친목모임, 주민 자조적 돌봄모임 등)를 연계 하는 등 정서적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의 지원요건⁶⁾을 벗어나는 경계에 놓여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는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발굴되는 위기 가정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2018년의 경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총 5,264가구 (가구당 월평균 260천원) 중 신규로 발굴되어 지원한 가구수는 위 [표4]에서 보듯이 2,707명으로 동별 평균 6.3가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한해 16,807가구로 동별 월 평균 4.3가구(가구당 평균 348천원)로 신규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10.6가구에 불과해 공적영역의 지원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표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연도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백만원)		8,137	9,219	10,898	12,340	13,085	16,463
실적	가구	3,912	4,158	3,740	3,987	5,175	5,264
	인원(명)	5,657	4,891	4,469	4,628	6,062	6,108

[표7]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연도별 현황

연 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연료,해산,장제,전기료 등)		특별교부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48,430	20,259	21,859	69,80	10,486	5,850	3,637	1,446	1,909	497	10,539	5,486
2018	16,807	7,632	4,266	1,622	3,706	2,434	1,434	652	571	149	6,830	2,775
2017	14,253	8,013	6,074	2,624	3,535	2,294	641	288	294	96	3,709	2,711
2016	8,338	2,877	4,574	1,607	2,391	830	897	314	476	126	-	-
2015	9,032	1,737	6,945	1,127	854	292	665	192	568	126	-	-

따라서 시는 민선6기 찾·동 사업의 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민선7기를 맞아 찾·동 2기에 대한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여 동 주민센터를 지역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치센터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공공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공정책과 민간자원의 활용과 주민활동의 통합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인식

이번 성과감사를 통해 사업 수급자, 일반시민,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찾·동 사업에 대한 인식을 시에서 실시한 성과관리 용역 및 감사기간 중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찾·동 사업 수급자⁷⁾의 인식도의 경우 찾·동 사업 이후 복지상담서비스 만족도, 방문건강서비스 만족도, 찾·동 사업 이후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향상도, 찾·동 사업 필요성 등이 아래 [표8]과 같이 대부분 4점대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8] 동주민센터 사업 이후 사업 수급자 인식도 조사결과

인식도 조사 항목	3단계 성과관리 용역 설문조사 결과	성과감사 설문조사 결과
복지플래너 등 복지상담서비스의 만족도	4.08	4.2
방문건강서비스 만족도	4.04	4.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후 복지서비스 향상도	3.93	4.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필요성	4.35	3.8

자료 :3단계 사업 성과관리용역 보고서 및 성과감사 중 설문조사 발체(5점 만점 기준)

하지만 반면에 사업의 수급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경우는 아래 [표9]와 같이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이후 서비스 변화의 인지도는 2.90점,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3.07점, 찾·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도는 3.38점 등 전반적으로 찾·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찾·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인식 역시 사업취지에 대한 공감, 사업지속에 대한 긍정도 등이 아래 [표10]과 같이 3단계

7) 사업수급자 :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빈곤위기 가정 등 방문서비스 사업의 수급자

성과관리 용역 조사 시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사업수급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 주도로 이루어진 찾·동 사업에 대한 일반시민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의 내부적 공감 및 합의에 부족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표9] 동주민센터 사업 이후 일반시민의 인식도 조사결과

인식도 조사 항목		3단계 성과관리 용역 설문조사 결과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이후 서비스 변화 인지		2.90
동주민센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11
지역사회 및 민관 협력에 대한 인지	우리 동네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2.38
	우리 동네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이 서로 신뢰한다	2.7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인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인지율	3.0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공감	3.3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질것이다	3.51

자료 :3단계 사업 성과관리용역 보고서 및 성과감사 발체

[표10] 동주민센터 사업 이후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인식도 조사결과

인식도 조사 항목	3단계 성과관리 용역 설문조사 결과	성과감사 설문조사 결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취지에 대한 공감	3.52	3.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지속에 대한 긍정도	3.23	3.4
찾·동 사업 이후 주민들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인식도	3.41	3.6
찾·동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도	3.29	3.5

자료 :3단계 사업 성과관리용역 보고서 및 성과감사 중 설문조사 발체(5점 만점 기준)

8) 조사기간 : '18년 10월 15일 ~ 12월 13일

다. 감사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1-2. 감사범위 및 감사초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①사업계획의 수립, ②사업 운영, ③성과측정, ④평가 및 환류 분야별 감사초점을 두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8개의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장·단기 개선대안을 마련하고 통보(10건)하는 것으로 처분방안을 정하였다.

[표 11] 분야별 개선요구 사항

분 야	감 사 결 과	처리방안	개선기간 9)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직무설계 후 충원인력 조정으로 인력확보 불균형 발생 부서별 협의 없는 유사중복사업 	통보 통보2	장기 단기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직 팀장 및 슈퍼바이저 지정 관련 전문성 확보 미흡 정신건강문제자 관련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방문인력의 안전지원대책 수립 필요 	통보 통보2 통보	장기 중기 중기
성과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단위 성과 측정 미흡 양적평가 위주의 성과관리 개선 	통보 통보	단기 중기
평가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를 활용한 역량강화 필요 	통보	단기

9) 개선기간 구분

- 단기 : 6개월 이내 계획 수립 및 1년 이내 이행
- 중기 : 1년 이내 계획 수립 및 3년 이내 이행
- 장기 : 단계별 계획 수립 및 10년 이내 이행

4. 4호선 상계역 하선열차 추돌사고 관련 안전분야 특별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상계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파악 및 기계·차량·관제·승무·전기·통신 등 업무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하고자 함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 감사기간 : 2020. 6. 19. ~ 7. 10.(기간 중 16일간)
-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교통공사 안전관리 분야 전반

감사 중점 사항

- 4호선 열차추돌 사고 원인
- 사고 후 각종 비상대응 조치 및 시설개선 적정여부
- 종합관제실 열차운행 관제 적정여부
- 신호체계시스템 정상유지 및 작동여부
- 사고 후(열차, 승강기 등)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 안전관련 내부 규정 적정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7	7	-	- (-)	2 (4)	2 (-)	- (-)	- (-)	2 (-)	5 (3)	1	-	7	- (-)	- (-)

□ 총 평

- 지하철 4호선 상계역 하선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 및 열차기관사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차량·신호체계 결함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적정 여부 등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열차를 운행하거나, 기계장치(ATC)에 장기적인 결함을 방치하고, 안전관리 시스템(비상매뉴얼 등)을 미정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
 -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안전에 관하여 평소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이번 열차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 기관사가 열차운행 중에 이례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관제 보고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 하였으며,(중징계)
 - ▶ 차상신호장치(ATC)가 15km/h 스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장기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검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 승무원 중에는 근무시간인 중간대기시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청사를 이탈하여 당구장을 출입하거나,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식사 및 라이브공연을 관람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하였으며.(경징계)
 - ▶ 열차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만든 비상매뉴얼은 정비하지 않거나 상급부서와 현업부서 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 전방주시 태만 열차운행(중징계), 근무지 무단이탈(경징계), 차량정비 및 유지 관리와 비상매뉴얼 정비 소홀(담당자 주의, 부서장 경고, 부서 주의) 등에 대하여 신분·행정상 조치하고,
 -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통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조치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내용	처분 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관제 미보고 운행 및 전방주시 태만	통보 주의요구 문책요구	- ATC 장치 기능에 대한 교육, PDT(출고 전 검사) 시행 시 무코드 검사 실시 방안 및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 방안 마련 - 관리·감독 소홀히 한 승무본부 주의조치 - 열차사고 유발한 기관사 '중징계' 조치	조치중
2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주의요구 문책요구	- 근무지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 근무지 무단이탈 직원 '경징계' 조치	조치중
3	차상신호장치(ATC) 검수 및 유지관리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15km/h 스위치 점검규정 마련 및 PCB(회로기관) 고장원인 파악·조치 - 유지관리 업무 소홀히 한 차량본부 '주의' 조치	조치완료
4	지하철 사고대비 비상훈련 지적 사항 미개선	통보 주의요구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안전관리업무 소홀히 한 총괄관리자 '경고' 조치	조치중
5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 실태 확인업무 소홀	주의요구	이행실태 확인업무 소홀히 한 담당자 '주의' 조치	조치중
6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부적정	시정요구	- 市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 공사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및 업무소홀 담당자 '주의' 조치	조치중
7	지적확인환호 실시여부 점검방법 부적정	개선요구	지적확인환호 실시여부 점검방법(시스템) 마련	조치완료
8	현장 비상조치 매뉴얼 재정비	통보	추돌사고 예방대책 마련	조치완료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일지 등 부실 작성	통보	근무상황일지 작성 지도·감독 철저	조치완료
10	지하철 1~4호선 도로상 작업구(맨홀)관리 소홀	통보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유지관리 철저	조치완료
11	상계역 역차추돌사고 시 '초기대응팀' 가동 상황전파 지연	시정요구	'초기대응팀' 가동시기 관련 매뉴얼 정비	조치완료
12	비상대응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물 관리 부적정	통보	비상대응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물 관리 철저	조치완료

5. 2019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최근 3년간 감사원(지방행정감사제1국)에서 처분한 지적사항 중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대행감사를 통하여 비위 예방
- 감사원 대행감사와 더불어 2019년 상반기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적되었던 가족수당 및 언론·외부에서 언급되는 출장 여비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하여 기관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제고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 감사기간 : 2019.11.11. ~ 2019.12.19.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6명

감사 중점 사항

○ 감사원 대행감사

분 야	감 사 사 항	감 사 범 위
계 약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회 계	급량비 지급 및 관리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인·허가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확인 등 사후관리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 자체 감사

분 야	감 사 사 항	감 사 범 위
수 당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여 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016. 1월 ~ 감사일 현재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8	39	0	0 (0)	1 (1)	0 (0)	0 (0)	0 (0)	0 (0)	22 (38)	0 -	0 -	1 -	0 (0)	1 (0)

□ 총 평

- 이번 감사는 「감사원법」 제50조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감사원의 요청으로, 최근 3년간 감사원(지방행정감사제1국)에서 처분한 지적사항 중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을 대행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2019.11.11.부터 2019.12. 29.까지 점검을 실시한 사항으로,
- 점검결과 금품 수수 등의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업무 처리 부적정, 관례적 업무 처리로 인한 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업무 담당자, 감독자(책임자) 등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처분 및 해당 기관 처분을 요구하였음.
- 현재 신분상 조치는 100% 이행 완료(39명), 행정상 조치 100% 이행 완료(22건), 모범사례 표창 이행 완료(1건), 통보 조치 1건이 진행되고 있음.(’20.10월 기준)
- 시설부대비의 집행과 관련하여서,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관이 아닌 자 및 부서 직원 전체에게 피복을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담당자에 대한 문책 및 자체 교육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 15,000천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문책 및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출장여비 과지급 46건 740천원, 가족수당 과지급 2건 220천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로 환수 조치하였음.
- 시의 수의계약 및 각종 계약 사항을 서울계약마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 재무과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기관 표창하였음.
-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 관련 규정의 미숙지 및 관례적 업무 처리 등에 기인한 바, 향후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정 숙지 및 교육 등을 실시·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법인카드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숙지,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2020. 9.14.) ○ 관련자 징계 의결 요구 (2020. 7.23.)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020. 8.25.) 	완료
2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철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해당 기관 기관경고 조치 ○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고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 건산법 및 계약 관련 교육 (2020. 9.14.)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건산법 및 계약 관련 교육 (2020. 9.22.)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 건산법 및 계약 관련 교육 (2020. 9.17.)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020.10.14.) 	완료 진행중
3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시설부대비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2020. 7.29.)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시설부대비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2020. 7.30.) ○ 푸른도시국 조경과 - 시설부대비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2020. 7.30.)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시설부대비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2020. 7.27.)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 시설부대비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2020. 9.17.)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시설부대비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2020. 9.16.)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020.10.14.)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4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 및 업무처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14.)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7.26.) ○ 재무국 재무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21.) ○ 공공개발기획단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7.) ○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14.)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7.24.)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 1.)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7.27.)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8. 6.) ○ 도시기반시설본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8.)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22.) 	완 료
5	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여비 지급 업무 처리 시 결과보고를 확인 후 출장여비 를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 철저 ○ 해당 기관 기관경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14.)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22.)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17.)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16.) 	완 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6	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숙지.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7.27.)	완 료
7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숙지.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2020. 9.22.)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020. 8.25.)	완 료
8	수의계약내역 공개업무 우수	통 보 (모범 사례)	○ 해당 부서 표창 조치	○ 재무국 재무과 -2020년 10월 사업으뜸이 (기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144호)	완 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 교통·도로시설물 관련 -

6. 시민불편사항 및 안전실태 특정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민(특히, 교통약자)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불편사항과 안전취약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 개선하고자 함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안전총괄실(도로시설과, 서부·동부도로사업소), 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 서부, 중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6개 자치구(용산, 강북, 은평, 영등포, 송파, 관악)
- 감사기간 : 2020. 5. 11. ~ 7. 10.(기간 중 45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외 6명 (* 외부전문가 3명)
- 감사범위 : 교통시설(지하철, 터널, 보호구역 등) 및 공원시설 시민 생활불편 사항 관련 업무 전반

감사 중점 사항

- 지하철 이용시 불편사항 여부 및 안전관리
- 도로(보도)상 교통약자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사항
- 도로 터널 분야, 기타 공원 이용시 불편사항 및 안전관리 분야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9	4				1			1	3 (4)			15		

□ 총 평

- 서울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 터널, 공원 등에 대하여 불편사항과 안전취약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 본 바(시민 설문 등 실시) 주요 불편사항은
 -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특히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 위치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불편, 고령자들의 안내사인 시설물 인지 불편, 아침 출근시간 대 지하철 역사 내 공중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줄서기에 대한 불편
 - 교통약자 교통시설물 분야에서는 보도상 차량진입 억제를 위한 말뚝(볼라드) 훼손 및 점형블록 설치 부적정으로 인한 불편, 시설물(교통표지판) 훼손으로 미관상 및 운전시 혼동으로 인한 불편
 - 터널 이용에 있어서, 터널이 어둡거나, 블랙홀·화이트홀 현상으로 터널 통과 운전 시 불편
 - 공원이나 산책로 이용에 있어서, 보행시 마주오는 사람과의 충돌이나 앞에 가는 사람의 진로방해로 인한 불편 등이 확인되고 있고
- 이번 감사·점검은 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 대한 샘플 감사·점검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통보하고
 - 서울시 유관부서(도시교통실장, 푸른도시국장)에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조치

7. 지하철 양방향집진기 설치공사 추진실태 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제295회 시의회 본회의(‘20. 6. 15.)시 제기된 의혹사항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설치공사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추진 내용

- 대상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 관련기관: 도시교통실,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국, 서울산업진흥원
- 감사기간: 2020. 6. 29. ~ 7. 17.(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안전감사2팀장 등 3명
- 감사범위: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추진실태 전반(‘19년 이후~현재)

감사 중점 사항

- 특정기술 우선 적용 지시 특혜제공 여부
- 특정기술 보유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적정 여부
 (공고 등에 따른 업체견적 접수시 미보완, 가격평가지 서울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 다른 기관(○○, △△) 대비 과다설계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9	4				1			1	3 (4)			15		

□ 총 평

○ 이 건 사업의 관련자료 확인 등 종합 감사결과,

- 도시교통실이 효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특정기술(집진기: 혁신상)을 우선 적용토록 지시하고, 서울교통공사가 특정기술 선정과정에서 가격 제시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된 가격을 보완조치 없이 평가 강행하고, 다른 기관 대비 1.5배 과다 설계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 특정기술의 평가, 선정, 설계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금번 감사 시 집진기의 셀 개소당 금액 비교결과 ○○광역시 등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교통실이 효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특정기술(제품)을 설치(통보)하게 한 문제, 서울교통공사의 특정기술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 운영 미흡 등 총 3건을 지적하여 '20.12월 현재 신분상 조치 2건(4명), 행정상 조치 1건 완료함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도시교통실이 '20. 2. 10. 특정기술(집진기: 혁신상)을 우선 적용토록 지시는 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선정(시범사업은 이미 '19.11.26. 선정)한 것으로 업체 선정에 있어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특정기술(제품)을 설치(통보)하게 한 문제가 있음
- 서울교통공사가 가격 제시기준(공고문, 이메일 안내)에 맞지 않게 제출된 가격을 보완조치 없이 평가하였으나, 응모업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격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평가방법(50점, 48점 등 최저가 순서 고득점 부여)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같은 가이드라인에 의거)자체 방침(위원 재량평가)을 정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심사위원회 운영 미흡 등으로 가처분 사건 발생 등 행정 불신을 초래함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 특정기술 우선 적용 지시 등 특혜의혹 논란을 초래한 관련자 주의 조치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관련자 주의 등 조치요구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01	효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특정기술 우선 적용 지시 부적절(4p)	주의요구	-글로벌챌린지에서 효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특정기술(제품)을 우선 적용토록 지시하여 특혜의혹 등의 논란을 초래한 관련자 주의조치	-'20.12. 신분상 조치 완료 (안전감사담당관-13934호)	완료
02	특정기술 모집공고·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미흡(9p)	주의요구 통보	-가격 제시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된 가격을 보완조치 등 없이 평가 강행하여 특혜의혹 등의 논란을 초래한 관련자 주의조치 -향후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시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평가방법 적용 또는 자체 세부평가지침을 구체화하여 시행	-'20.10. 신분상 조치 완료 (서울고용공사기술감사처4740호) -'20.11. 양방향집진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안) 마련 (서울고용공사기술감사처4740호)	완료